

清朝의 龍袍小考

박 춘 순 · 김 재 임*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Ch'ing Dragon Robes

Chun-Sun Park · Jae-Im Kim*

Prof. Dept. of Clothing & Testiles, Chungnam Univ.
Dept. of Clothing & Testiles, Chungnam Univ.*

ABSTRACT

Dragon robe was defined as a robe on which the principal design consisted of dragons. Dragon patterns have been used on princes robes during T'ang Dynasty. In Sung, dragon-figured robes seem to have an Imperial prerogative. Yuan took over the use of robes with dragons patterns as a definite institution. Ming tried to reject all Yuan innovations, the dragon robe was retained as an unofficial court costume. The Emperor's semiformal robes which at first had four dragon medallions, later had twelve along with the 12 Symbols(十二章紋).

As Ch'ing dragon robes were only intended for semiformal use, The Later Ch'ing robes date from after 1759, when the Ch'ien-lung(乾隆) introduced 12 Symbols on Ch'ing robes. The Ch'ien-lung laws were disobeyed, notably the ones that specified the number of claws on the dragons. The Emperor's dragon robe, lung-p'ao,(龍袍) was described as bright yellow in color, having four slits and horsehoof cuffs. The basic pattern consisted of nine dragons, in addition it had 12 Symbols.

The elaborate textile techniques reached their peak in Ch'ing Dynasty-with its Weaving and Dyeing Office in Peking, and its factories at Hangchow(杭州), Soochow(蘇州), and Nanking(南京)-helps to explain why the decay of the Ch'ing bureaucracy hastened the decline of dragon robes. In the Ch'ing Dynasty two terms were used for dragon robe, depending on the number of claws on the dragons. Those with five-clawed dragons were called lung-p'ao, while those with four-clawed dragons were called mang-p'ao(蟒袍). The Court felt compelled to take corrective measures. It decreed that Ministers of State and other officials, who had been bestowed five-clawed lung dragons, must take out one claw.

Finally, the sale of ranks and the attendant privilege of wearing dragon robes gradually increased during the 18th century, reaching its height in the 19th century. Finally, after the Taiping Rebellion, when the Imperial Treasury was depleted by the wholesale destruction of revenue-producing lands, the Chinese government came to depend on such sales as an important source of revenue and the practice

became even more widespread. The ensuing mass production of dragon robes, and the necessity of conforming to the fairly rigid basic pattern established in 1759, resulted in a marked deterioration of workmanship, and a comparative monotony of decoration.

The patterns on the dragon robes slight changes continued to be made in the ways of representing them. The li shui(立水) portion at the base of the robe became increasingly wider throughout the 19th century. The background became cluttered with symbols of good fortune, scattered among the clouds and waves. As a result of all this extraneous decoration, the dragons were so crowded that they had to shrink back into the small size that they had originally occupied in the medallions.

Kuang-hsu(光緒) was a long one, allowing time for the manufacture of numerous robes. Also, it would seem likely that Occidental museums and collections would have a considerable number of his robes, in view of the widespread looting of his palaces during the Allied occupation of Peking in 1900, and the frequent sales of Late Ch'ing imperial textiles by destitute Manchu courtiers in the '20's.

Key Words : 龍袍, 龍紋樣, 十二章紋, 五(四)爪龍袍

dragon robe, dragon pattern, 12 symbols, five(four) clawed robe

I. 머리말

中國文明의 역사는 古代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하여, 근세에 이르러는 시노아즈리¹⁾와 20세기에는 淸朝 後期부터 멸망(1912) 이후에 骨董品 시장을 통하여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清代 後期에 骨董品시장이 번성하게 된 요인은 19세기말에 이르러 清朝의 봉과와 경제적 빈곤으로 清朝는 王朝의 秘寶를 내놓게 된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철도부설 등의 근대화 작업에 동반되는 대규모의 발굴작업이 中國 最古의 예술품들을 출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유물 중에는 殷·周王朝의 기괴한 青銅器를 비롯하여, 唐·宋이나 元·明의 陶瓷器와 清朝의 漆工藝品과 染織工藝品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清朝 染織工藝品을 비롯한 服飾品과 刺繡品들이다. 특히 染織工藝品 중에서도 皇帝 이하 貴族들이 착용하던 龍袍는 典型的인 것으로, 그 예술적인 기교가 가장 정교하게 발휘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清代以前의 中國의 龍袍의 역사를 살펴보고, 둘째 龍袍가 清代에 특히 유행하게 된 배경으로 清代의 服飾制度와 染織工藝의

발달상황을 살펴본다. 셋째 遺品을 통하여 清朝의 龍袍와 蟒袍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清朝 龍袍와 蟒袍의 定義를 내리고, 그것이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각국 박물관이나 개인 수집가에게 소장되고 있는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龍袍는 1644년에서 1912년까지 거대한 中國을 지배하였던 滿族의 清朝에서 가장 발달된 모습을 보인다. 當代에 있어 황제나 관리들이 착용하였던 長袍上의 기본문양이 龍이었음으로 龍袍라고 지칭하나, 이 龍袍의 구성은明朝의 寬闊한 전통복식을 대대적으로 개변시킨 것이다. 즉 袍는 품을 줄이고, 길이를 무릎밑에 이르도록 하고, 여밈을 大襟으로 고치고, 소매는 좁게 하고, 袖口에 馬蹄袖를 첨가하여 손등을 덮도록 하는 등 유목기마민족의 실용적이며 尚武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中原에 진입한 清朝은 규정된 모양의 龍袍를 착용하도록 법령을 내렸으나, 차차 이것이 준수되지 않아 18세기에는 奢侈禁令도 頒布되기 시작하였다. 즉 재단이나 색상, 문양 등을 계급에 따라 차이를 두도록 하여, 皇帝는 五爪龍·十二章紋·四開衩가 있는 黃色袍였음에 대하여, 皇太子는 색상이 다르고, 官吏들은 오직 四爪龍과 二開衩의 龍袍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龍袍란 龍이 主紋樣으로 장식된 衫를 지칭하나, 古代에는 十二章紋의 하나로 사용되었으며, 크기 또한 매우 작아 龍袍라고 부를 수 없었다. 진실로 龍袍라 할 수 있는 것은 唐代부터 출현하여 宋代와 元代를 거쳐 清代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清代에 龍이 主紋樣으로 나타나는 衫는 皇帝의 朝袍와 皇后의 吉服袍 등도 있었으나 龍袍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龍袍는 廣義로는 清朝에 있어 皇帝와 官吏들이 착용하였던 吉服袍로, 일반적으로 龍紋樣과 大襟·窄袖·馬蹄袖·開衩로 구성되어 있으며, 狹義의 龍袍는 구체적으로 五爪龍·十二章紋·四開衩의 黃色袍를 지칭하고, 四爪龍·二開衩인 他色의 衫는 蟒袍라고 定義한다.

본 연구는 廣義의 龍袍를 대상으로 하였음으로, 皇帝의 龍袍와 官吏의 蟒袍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清朝 말기의 복식문란기에는 四爪龍이어야 하는 蟒袍에도 五爪龍을 배치하여, 五爪·四爪로는 더 이상 龍袍와 蟒袍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II. 清代以前의 龍袍

龍紋樣이 있는 衫의 착용은 清代에 이르러 최고로 盛行을 보았으나, 龍의 紋樣이 服飾에 반영된 것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었다. 龍紋樣이 衣服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中國 古典時代의 禮服이었으나, 이 말은 단지 中國의 帝王이나 高官이 입었던 祭服 上衣만을 의미하며, 완성된 의복으로서의 衫는 아니었다. 또한 龍은 十二章紋 속에서 하나로 취급되어, 여기서의 龍의 형상은 매우 작고 겹순한 모습을 하고 있어, 紋樣으로서 의미가 매우 적었음으로 진실한 의미에서 龍袍라고는 할 수 없다.

袍에 있어 十二章紋의 하나가 아닌 독립된 문양으로서의 龍의 사용은 처음으로 唐代(618-908)로 올라간다. [唐會要]에 694년 則天武后(690-705)가 文武官에게 盤龍刺繡袍를 사여했다는 기록은²⁾, 龍袍라는 用語의 시작과 龍袍 賦與의嚆矢로 보인다. 그러나 唐代에는 [唐史]를 비롯한 다른 法典에 皇帝의 龍袍에 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어, 皇帝가

실제로 龍袍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北京故宮에 [歷代帝后像] 중에 唐代 초기의 두 皇帝가 龍袍를 입고 있는 肖像畫는 있으나, 이 것은 後代에 그려진 그림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³⁾.

[宋史]에는 宋(960-1279)의 太祖(960-976)가 신하들에게 진주로 자수한 皇帝袍를 下賜하였다고 하니⁴⁾, 宋代에 또한 皇帝가 龍袍를 착용했다는 기록이 없고, 皇帝의 龍袍 착용 모습도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龍의 형상을 알 수 없다. 다만 皇后禮服의 것·도련·소매부리 襪裝飾에 三爪龍이 보이며⁵⁾, 南宋代 유명한 장군인 岳飛肖像畫⁶⁾인 <그림 1>에 대형 開補(등근)형태의 龍의 패턴은, 宋代 후반기부터 龍이 대담한 형상으로 발전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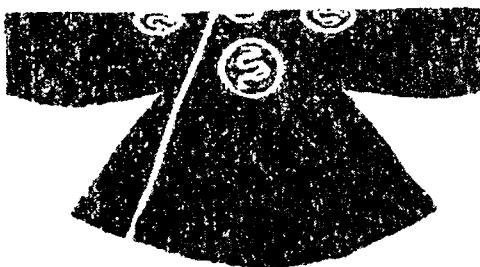
<그림 1> 岳飛肖像畫『中國歷代帝王錄』

元代(1206-1323)에는 龍紋樣에 대한 언급이 보다 많이 보인다. [元史] 與服志의 仁宗延祐元年(1314)에 龍鳳紋의 사용을 금지한 항복이 있어⁷⁾ 元代에 龍紋 사용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野獲編]에는 王公貴人의 복식에 九龍이 있는데 一龍만이 正面을 향하고⁸⁾ 있다고 구체적인 형상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天子가 金龍青羅의 賢孫을 입었다는 기록도 보인다⁹⁾. 나아가 元代 睽畫에 雜戲服으로 龍袍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¹⁰⁾. 이것으로 元代에 龍紋樣이 宋代보다 더욱 대담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며 그 외에 元朝廷은 帝王后妃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龍鳳紋을 입을 수 없다고 하였다¹¹⁾.

明代(1368-1661)는 더욱 여러 가지 형태의 龍紋

樣이 의복에 반영되고 있다. 우선 [明史] 輿服志에 太祖洪武3年(1371)에 제정한 皇帝 常服에 前後兩肩에 각각 織金 盤龍이 한 개씩 있다고 하니¹²⁾ 모두 4개의 團龍이 있었다. 그러나 文武官 常服에는 龍紋이 없었으나 賜與服에는 蟒紋이 있었다¹³⁾. 明代에도 器物에 龍鳳紋 사용의 금지가 있는 것¹⁴⁾을 보면 服飾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禁令에는 보이지 않는다.

明代의 龍紋樣의 袍에는 北京 北郊의 定陵에서 출토된 神宗萬曆皇帝(1572-1620)의 묘에서 출토된 袞服과 龍袍의 실물이 있다¹⁵⁾. 定陵 출토의 明代의 袞服은 지금까지의 歷代王朝의 것과는 달리 龍이 主紋樣인 12개의 團龍으로 표현되고, 다른 나머지 11개의 章紋은 아주 작게 나열되어 있다. 禮制의 常服인 龍袍는 <그림 2>에서 보듯이, 圓補(團龍, 둥근 형태) 형태로서 前後兩肩 모두 4개의 團龍으로 구성되어 있어, 朝鮮朝의 國王의 袞龍袍와 모양이 동일하다. 그러나 明代의 신하들의 龍袍는 황제의 龍袍와는 달리 上部의 전후에서 二條의 主龍이 자유로운 형상을 하고 있으며, 膝襠부분에 小龍들이 帶(띠)를 형성하고 있다¹⁶⁾. 이것으로 보아 明代 龍의 모습은 皇帝는 둥근 團龍모습이며, 官吏의 龍은 자유스런 형상을 하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림 2> 明代 龍袍의 紋樣配置圖

또한 明代에는 外國의 통치자에게 龍袍를 하사하는 관습이 있었다. [明史] 列傳에는 永樂5年(1407)에 현재 말레이시아의 봉건왕국이었던 滿刺加(Malacca)의 왕에게 龍袍를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¹⁷⁾, 正德13년(1518)에는 멀리 天方(Mekka)의 사절에게 蟒龍衣를 하사하였다¹⁸⁾고 한다. 또한 嘉靖3년(1524)에 지금의 사마르칸드 근처의 失刺思(Shiraz)의 使節이

말과 方物을 갖고 조공하고, 그 대신 蟒袍를 만들어 주도록 원하고 있다는¹⁹⁾ 사실로 보아, 당시 이웃나라에서 龍袍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永樂(1403-1424) 이후에는 宮廷의 宦官 등에게도 蟒袍를 하사하는 습관이 있었다²⁰⁾고 [明史]는 기록하고 있다.

III. 清朝服制와 歷史的 背景과 染織工藝의 發達

清朝(1616-1912)는 중국 동북 변방에 살고 있던 滿洲族이 쇠망해 가고 있는明朝(1368-1644) 말기의 내란을 틈타 北京을 함락하고 나아가 중국 전토를 지배한 異民族에 의한 征服王朝였다²¹⁾. 중국의 民族主義의 견지에서 본다면 清朝의 건립은 역사상 굴욕적인 사건으로, 滿洲族 침입군에 대항하여 中原民族은 적극적으로 不服從運動을 계속하여 清朝의 통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清朝의 황제와 황족들은 차차로 漢文化에 동화되어 征服王朝라는 사실을 잊게 되었다.

清朝의 服制는 [清史稿·輿圖簿]²²⁾, [東華錄]²³⁾, [大清會典]²⁴⁾, [大清通禮]²⁵⁾, [禮部則例]²⁶⁾ 등이며 [大清會典]은 乾隆이후부터는 [會典]과 [則例]로 나누고, 嘉慶이후는 [會典]과 [事例] 이외에 [會典圖]로 나뉘어 있다.

[東華錄] 崇德二年條(1637)²⁷⁾를 살펴보면,清朝(1616-1912)의 服制가 최초로 정해진 것은, 國號를 “大清”으로 개칭한 시기인 太宗 崇德(1636-1643)연간이었다. 太宗은 특히 滿洲族의 前身이었던 女真族의 金朝(1115-1213)가 本民族의 言語·習俗을 망각하고 中原의 漢族習俗을 따른 결과, 그 멸망을 재촉하였다고 하여, 滿族 전통의 服制를 절대로 폐기하지 말라는 훈령을 내린다. 이것은 滿洲의 오랜 전통에 호소하여 滿洲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騎射를 중상하는 滿族 고유의 習俗을 보존시켜 騎馬에 편리하도록 清朝 禮服의 도련 前後에 開衩(트임)를 넣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崇德 다음에 世祖 順治(1644-1661)연간에 대대

적으로 服飾制度를 개혁하였다. 즉 順治의 개혁은 潘陽에서 北京으로 遷都하여 中原에 군림하는 중국을 완전히 정복한 朝廷으로서(1652년), 漢民族 통치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清朝 服制에 漢民族의 요소를 반영하여 文武官 官服에 補章(흉배)을 부친 补服, 天子 朝服에 十二章紋을 새겨 넣어, 중국 역대 王조의 정통성을 살린 漢·唐服制의 전통을 계승하는 내용이었다.

順治의 服制는 康熙(1662-1722)·雍正(1723-1735)·乾隆(1736-1795)三代에 小修正을 거쳐 清末까지 지속되었다. 1772년 [東華錄] 乾隆37年條²⁸⁾에 내린 법령은, 崇德朝에서 이미 보인 바와 같이 遼·金·元代의 官服制度가 처음에는 國俗을 따랐으나 나중에 漢唐儀式으로 개변한 것이 국세를 쇠약하게 만든 것이라 거듭 강조하였다. 崇德代에 滿洲族 고유의 服制를 채용하여 풍속을 보존시키려는 의도가 乾隆代의 服制 정신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康熙(1661-1722)는, 異民族으로서 중국을 지배하게 된 滿族을 중국민족의 王조처럼 생각하게 하였으며, 또한 滿族 고유의 尚武의 기상도 절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二律背反적인 교훈을 취하였다²⁹⁾. 乾隆(1735-1795)도 이 遺訓을 망각한 것은 아니지만 滿族 의식에 대변화를 일으켰다. 乾隆시대는 중국 서역지방의 回部 통치하에 있던 喀什(Kashgar)지방까지 완전히 평정(1759)하여 清朝의 영토가 최대였으며, 국력이 가장 떨치고 있던 시대였다. 그리하여 清朝의 滿族이 漢族처럼 행세하게 되어 차차로 이 康熙의 정책이 희미하게 되었다. 清朝는 乾隆시대를 경계로 하여 유교적인 문화를 이어받은 중국의 王조로서 正統性을 드디어 획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³⁰⁾.

이와 같이 清朝는 遼·金·元 三代가 이들의 衣冠을 漢唐儀式으로 개변하였으므로 풍속이 날로 사치하여 국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에 특히 주목하여,明朝를 멸망시킨 후 满族에게 剃髮改服하는 등, 满族의儀式에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清朝가 이 같은 정책을 강요한 이유는, 满族을 통치하여 臣服으로 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전통적인 服制인 寬衣大袖는 尚武精神이 결핍된 복장었기 때문이다³¹⁾.

그러나 清末에 이르러 270년간 满族 통치자는 本族인 满族의 國制를 견지하면서, 한편으로 漢族 전통문화의 계승을 중시하게 되어 점차 漱族의 懿例를 인정하면서 清朝 전통의 현실도 받아들였다³²⁾. 이와 같이 清朝는 건립 초기와 멸망 전후에 漱族 전통 복식에 대한 복식 정책에 차이가 있었다.

清朝 末期의 官服은 四十八種³³⁾이 있었으며, 官吏의 班次에는 正·一品에서 從九品에 이르는 18계급이 있었으며, 官服은 正·從은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官服에는 一品에서 九品까지 九種類만 있었던 것으로, 九品 이하의 未入流의 관리는 九品官服과 같았다³⁴⁾.

이와 같은 清朝의 服飾政策下에 구체적인 복제의 禁令은 초기인 崇德3년(1638)에 처음으로 漱族의 衣冠을 모방하는 자는 중죄에 처한다는 令을 내렸다³⁵⁾. 중기에 해당하는 康熙부터 乾隆시대에 이르는 기간(1662-1795)의 服制는 官吏들은 정해진 制服을 착용할 것이며 下級者가 上級者の 制服을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법령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기간에 服制가 매우 문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嘉慶(1796-1820) 이후에는 清朝의 服制가 쇠퇴한 시기로 宗室이나 宮中 관리들의 服飾紊亂을 염두에 경계하고 있다. 清朝 후기에 있어 복식에 대한 禁令은 漱族에 대한 胡服 辯髮의 강화정책보다 满族의 귀족이나 부호계급에 대한 奢侈禁止令으로 중국 근세사에 있어 繢華 奢侈가 최고 절정에 달한 시기이다.

나아가 清朝 후기에는 實官制와 服飾下賜 및 革職³⁶⁾이라는 제도가 더욱 복식제도의 문란과 服飾奢侈를 조장하고 있었다. 實官制란 19세기에 있어 外國勢力과 太平天國에 이어지는 국가의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일정의 錢穀(金錢과 米穀 즉 재물의 총칭)을 현납하는 자에게 職位를 주는 제도로 그 품위에 상당하는 官服을 입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였다³⁷⁾. 服飾下賜는 邊疆 소수민족의 정복이나 영토 확장 등을 위한 전쟁에 있어 武勳을 세운 文武官에게 품계를 상승시켜주는 加級制度³⁸⁾로 황제가 上級의 官服을 하사하는 규정이다. 革職이란 名譽刑으로서 服飾의 禮儀停止로서, 官職을 免職³⁹⁾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服飾 제도로 인하여 官服의 일시 정지가

있는가 하면⁴⁰⁾, 賞勳으로서 복식의 下賜 혹은 禁色의 착용을 허락하기도 하였다. 龍臣에게 五爪 혹은 三爪龍의 紋樣이 있는 衣服器物을 하사하는 제도는 明代부터 행하여진 것으로⁴¹⁾ 龍鳳紋 僭用(참용)⁴²⁾의 죄를 정한 조문을 보면 上賜에 의한 者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었다⁴³⁾.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清朝는 明朝의 舊禮에 따라 五爪의 龍紋 기타 禁制 衣冠을 功臣에 上賜하는 규정이 있어, 順治9년과 12년에는 賞賜 이외에는 龍紋의 사용이 금지되었고⁴⁴⁾, 康熙26년에 服色의 禁制를 엄하게 하여, 暗花 四爪龍의 四團龍 혹은 八團龍의 紺, 내지는 秋香色에 비슷한 香色 및 米色을 금지하고 있다. 五爪의 龍紋을 賞賜받는 자도 실제로 착용 시에는 一爪를 삭제하도록 명하고 있다. 乾隆 이후에 있어서는 服飾賞賜의 제한은 점점 엄하게 되어 五爪龍의 衣服 및 五爪暗龍의 紺을 받는 자는 여전히 五爪중 一爪를 없애도록 더욱 강조하고 있다⁴⁵⁾. 그러나 龍의 발톱 수를 제한한 것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남아있는 유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미 明律에도 龍鳳紋 僭用의 罪가 기록되고 있다⁴⁶⁾. 清의 律令에서도 관리가 禁制의 龍鳳紋을 신분을 넘어 사용할 때는 杖一百에 처하고, 官職을 그 만두도록 하며, 일반인들이 官服을 함부로 착용하면 本人 및 그家長, 그리고 官服을 만든 工匠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금지된 龍鳳紋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을 고발하게 되면 銀五十兩의 賞金을 받게 하였다.

清代에 官吏가 禮法을 어기면 그 罪가庶民보다 倍가되고⁴⁷⁾, 官吏가 일정한 시간 및 장소에 있어 착용해야 할 冠服을 잘못 착용하는 경미한 服制違反에 대하여는 징계 죄를 과하는 것만으로 형벌에 처하지 않았다. 그러나 官吏의 官服은 오로지 그 품급에 의한 것으로 加給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만일 加給하여 上級 官服을 착용하면 本人 및 그 失察의 官吏는 벌을 받았다⁴⁸⁾. 또한 [會典事例]에 의하면 지방 관리가 중앙의 大臣 등을 만날 때는 補服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함부로 朝衣 蟬袍를 착용하면 예에 의하여 처분을 받았다.

이상과 같이 일정한 신분의 소유자가 일정한 制

服을 착용하는 것은 공공 질서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그 신분을 갖는 사람에게 영예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국가는 服制를 과파하는 자를 처벌하여 공공 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일정한 신분을 갖는 자의 특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을 어기고 上級制服을 착용하는 僭用 혹은 違式의 制服穿用을 벌하는 법조는 국가가 服制를 제정한 시기부터 있었으며, 이러한 法條는 唐朝에서 처음 보인다⁴⁹⁾.

이와 같이 清朝에 복식에 대한 奢侈禁令은 몇 번이나 공포되나, 漢族의 胡服·辯髮의 강화정도에는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고, 오히려 滿洲族 貴族이나 富豪들의 豪華 奢侈에 대해 더 강력하였다. 이리하여 上級官服 및 下賜官服의 남발로 인한 服制가 봉괴되어, [會典事例]⁵⁰⁾에 의하면 清朝은 여러 번의 諭旨를 내리고 있어 清末에 이르러 官服의 수많은 遺品이 골동품시장을 돌아다니게 된 연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

清朝의 官服의 사치가 범람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清朝의 염직공에 발달에 기인하고 있다. 清朝는 濰陽에서 Beijing으로 遷都한 이후, 滿族 冠服制度의 推進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그 특징은 馬蹄袖·辯髮로 대변되는 것으로, 明代 寬衣大袖의 風習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이었다⁵¹⁾. 이 개혁은 漢族들의 강렬한 불만을 야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清朝은 이 제도를 그대로 강행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清朝의 통치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漢族 織繡文化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626년 太宗 皇太極(홍타이지, 1626-1643)은 2년에 年號를 天聰으로 고치고 民族名을 女眞에서 滿洲로 고쳤다. 이어서 天聰9년(1635)에 龍袍 위에 漢民族 전통의 八吉祥圖案⁵²⁾을 채용하였고, 乾隆皇帝(1735-1795)는 明朝에 기초하여 龍袍에 十二章紋도안을 채용하여 더욱 官服 및 織繡藝術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官服上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清朝은 明代로부터 내려오던 宮廷 所用의 직물제작을 담당하는 官營 織染局을 Beijing에 두고, 江南 織繡生產의 주요 지구인 南京·蘇州·杭州 세 지역에 江南 三織造局을 설립하였다⁵³⁾.

清朝는 [皇朝禮器圖式]과 [大清會典圖例] 등 문헌에 실려있는 대로, 강남 직조국에서 직성을 필하게 한 후에, 다시 衣料 위에 蕡花하고 裁斷하여 縫製하게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江南 三織造局은 清代에 있어 官房機構의 織繡工作 중 중요한 역할을 하여 清朝가 수요로 하는 織繡精品을 제작하는데 오로지 전념하였다. 이들은 帝后王公의 服用, 百官과 外藩頭人의 賞賜에 사용하고, 國家 廢典의 장식내지는 天地祖宗 제사에 사용되는 制帛 등, 모든 것이 三織造局에서 취급되고 있었다. 清代 전기에 있어 강남 삼직조국의 년 생산량은 매년 近萬匹에 이르렀다고 한다⁵⁴⁾.

특히 清朝 황제의 龍袍製作은 궁중의 謂所인 如意官⁵⁵⁾의 당시 제일의 정밀 설계사가 圖樣을 설계한 다음 친히 皇帝의 인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南京이나 蘇杭으로 보내져 궁정파견의 직조 감독 하에 제작되었다. 당시 [蘇州織造局志]에 의하면 蘇州만 해도 織機가 4백여 개가 있었고 직공이 2300여명, 때로는 한 벌의 龍袍製作에 190일이나 걸렸다⁵⁶⁾고 하니 그 규모와 직조의 섬세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清朝 染織技術의 발달은 더욱 服飾奢華풍조와 어우러져 官服製作의 남발을 초래하였다.

IV. 遺品에 나타난 清朝의 龍袍와 蟒袍

孔子의 後裔인 衍聖公은 중국의 봉건사회에 있어 특권을 갖고 있었다. 五代시기에 五品에, 元代에 三品에, 明初에 一品官으로 그 지위는 巡相 다음에 해당하였고, 승상제도가 폐지된 이후는 그 서열이 문관에서 제일 높았다. 清代가 되면 연성공의 서열은大臣 보다도 상위가 되어 자금성에서 말에 타던지 황제 전용의 御道를 사용하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나아가 황제는 몇 번이나 연성공에 대하여 제사의 전답을 하사하고 각종 세금이나 부역을 면제하였다. 清朝 말기가 되면 孔府는 조정이 준 특권을 더욱 올려 관위·작위를 팔 권리, 소송의 독점처리권, 지방행정사무에 대하여 간섭권 등의 특권도 쥐고 있었다⁵⁷⁾.

이와 같은 孔府에는 元·明·清 및 근대의 각종 衣冠服飾이 소장되고 있는데, 특히 明·清代服飾이 비교적 많아 이중에는 朝服과 蟒服 등이 포함되어 있다⁵⁸⁾. 이 의관 중에는 元代의 “七梁冠”이 매우 진귀하고 오래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중에는 연성공이 황제 朝見 時에 착용하였던 朝服을 비롯하여, 각색의 袍服이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두 벌의 袍는 모두 明 萬曆(1572-1620)代에 하사된 것이다. <그림 3>의 大紅色 褲袍는 가슴과 등 어깨에 거쳐 四爪龍紋이 있으며 양소매에 각각 一條의 四爪龍이 있다. 膝襠부분은 橫으로 10條의 行龍이 있다. 이러한 상부 패턴은 거대한 雲襟 상태를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이 袍는 明代의 것이지만 元朝양식으로 무릎에 龍紋의 장식 띠를 갖고 있다⁵⁹⁾. 이 膝襠袍와 비슷한 것에 明代 李弘濟 膝襠袍가 있다⁶⁰⁾.



<그림 3> 大紅色雲羅繡金妝花蟒襠袍「衣裝」

그리고 <그림 4>의 藍色 五彩繡袍는 파손이 심하나 紋樣은 보존되어 있다. 이 포는 明初 황제가 연성공에게 하사한 것으로, 가슴과 등에 二條(마리), 양어깨에 二條, 양소매 전후에 四條로, 크기가 다른 8條의 龍紋이 비교적 자유스럽게 袍의 상반부에 능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모두 四爪로 되어 위와 동일한 문양이다.



<그림 4> 藍色雲羅繡蟒袍「衣裝」

清代의 藍袍는 清朝의 賜與服으로 朝服이나 禮服으로 사용하였다. 이 衫는 清朝가明朝의 寬衣大袖長袍를 滿族服飾의 특징인 窄袖緊身과 四開衩로 改變한 清朝樣式이다. 이것은 馬蹄袖와 더불어 清朝服裝이 다른 遼·金·元服制와 구별되는 주요 표지이다. 그러나 이 蟒紋은 清代에 성행하던 五爪九蟒이다.

또한 연성공이 착용하였던 도련에 五爪蟒紋과 凤紋으로 직조한 橫襠이 있는 下裳이 있는데 속칭 襯裳이라 칭한다. 이 襯裳의 양식은 주름을 잡은 圈裙형식으로 길이가 짧아 바지 위에 둘렀던 襯裳의 장식이라고 볼 수 있다. 五爪蟒의 특수 문양 규정에서 본다면 衍聖公의 賜服을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明代의 龍袍로 王鑒 초상화를 보면 머리에는 展脚 帷頭와 赤色의 織金蟒袍를 입고 있으며, 또 하나는 李貞의 초상화로 烏紗帽과 青色 織金五爪蟒袍를 입고 있다⁶¹⁾. 그러나 [明史·輿服志]에 의하면 正德13년(1518)에 관리의 朝服으로 3品은 蟒⁶²⁾으로 되어 있어 龍은 황제의 것이지만 蟒은 3품이 착용하였으며 龍袍도 공식적인 금령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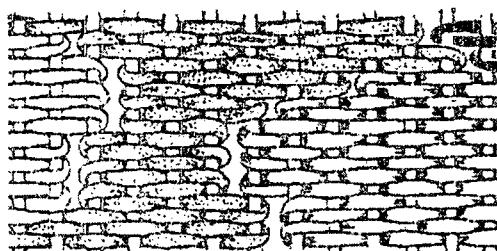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연성공 복식의 蟒袍를 살펴본 결과 明代에 있어 蟒紋은 四爪龍을 말하여 明代에 편찬된 [野獲編]에 蟒은 龍과 모양이 흡사하나 발톱이 한 개 적은 四爪라는 것과 일치한다⁶³⁾. 명조는 단지 황제와 그 親屬만이 五爪龍문양의 의복을 입을 수 있었는데 明後期에 重臣도 五爪龍을 입을 수 있었다.

清代의 연성공포는 다른 관리가 입는 蟒袍와 일치하는 五爪의 蟒袍였다. 明代의 龍袍나 蟒袍는 西歐에 박물관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며, 중국에 있어서도 연성공의 유물만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초상화에 보일 뿐이다. 清代에는 실제로 五爪를 사용하지만 황제 이외가 착용할 경우는 蟒紋으로 취급하여 이 蟒紋을 넣은 衫를 “龍袍”라 부르지 않고 “蟒袍”라 명명하였다.

清代의 皇帝服飾에는 [大清會典] 則例에 의하면 朝服·吉服·常服·便服이 있었다. 이 중에 皇帝와 皇太子의 吉服이 龍袍이나 衍聖公의 遺品에서 소개한 蟒袍와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皇帝龍袍는 圓領右衽大襟으로 馬蹄袖가 붙어있

으며 전후좌우에 트임이 있는 長袍이며 明黃色緞에 緯絲⁶⁴⁾나 牀花⁶⁵⁾·刺繡로 金龍 九條와 황제를 상징하는 十二章紋을 열거하였고, 사이사이에 五色의 雲蝠紋과 下幅에 八寶立水를 배치하였다. 옛날 帝王의 위치는 九五至尊⁶⁶⁾이라 칭하여 九와 五 두 숫자는 통상 高貴를 상징하여 황실 건축·생활기구 등 방면에 모두 반영되고 있었다⁶⁷⁾.



<그림 5> 緯絲 織物의 構成圖

황제의 龍袍(그림 6)는 九條 金龍을 자수하였다 고 하나, 圖像 및 實物을 보면, 龍袍 前面에 三條, 後面에 三條, 그리고 兩肩에 二條로 모두 八條가 있어, 九條에서一條가 모자라지만, 안자락에一條가 들어 있다. 이렇게 모두 龍袍에 자수한 龍의 數는 확실히 九條이나, 龍袍를正面이나 後面에서 보면 모두 五條로 보이므로, 九·五라는 “至尊의 數”와 합치한다. <그림 7>는 清代 龍袍의 龍紋樣의 배치도로 清代 九龍紋은 전후에서 五龍이 보인다.

그리고 九龍을 둘러싼 공간에는 十二章紋과 雲紋을 비롯한 길상도안이 색채도 풍부하게 자수되어 있다. 길상문양에는 종교관계의 정식인 것,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는 잡다한 것 등을 합쳐보면 이 수는



<그림 6> 清代 龍袍『龍袍』



<그림 7> 清代 龍袍의 紋様配置圖

대단한 것이다.

清朝 黃帝들의 龍袍는 그 착용자가 확실히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한다. 세상에서 흔히 康熙帝의 龍袍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나 乾隆帝의 御衣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확증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龍의 紋樣의 구성이나 배치, 袍의 형태, 염료분석 등을 통하여 자세한 고증이 있다⁶⁸⁾.

그러나 染織 工藝 이외의 다른 공예분야, 가령 漆工藝 · 陶工藝 · 金屬工藝 등 일반에 나타나고 있는 意匠이나 技巧는 확실히 乾隆年制라든가 雍正年制라는 銘記가 있는 정확한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清朝의 여러 가지 규칙 등을 참고로 당시의 龍袍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단지 康熙帝 17子에 해당하는 親王(雍正帝의 弟) 果毅(과의)의 妃에서 발견된 여러 별의 袍는 親王이 1738년에 사망하였음으로 康熙시대의 袍의 양식과 나아가 계속되는 雍正시대의 양식의 일부를 알 수 있다. 乾隆 이후 嘉慶 · 道光 · 咸豐 · 光緒 그리고 최후의 황제였던 宣統이라는 백여 년 사이에 龍袍의 제도는 계속되고 있었으나 국정의 불안이나 외국 간섭에 의한 국력의 쇠약이 차차로 복식에도 반영되어 咸豐 이후는 거의 볼 만한 것이 없다.

清朝에 있어 앞서 논술한 바와 같이 袍에 龍紋과 十二章紋이 들어간 것을 龍袍라 부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圖錄에서 소개되고 있는 袍는 대부분이 乾隆 이후의 것으로 1759년 乾隆24년부터 龍袍에는 十二章紋이 부활되어, 龍紋은 있으나 十二章紋이 없는 袍는 蟒袍에 속한다.

[皇朝禮器圖式]⁶⁹⁾에 의하면 皇子의 蟒袍는 金黃色으로 九蟠을 자수하고 도련이 四開되었고, 民公은 藍色 및 石青色으로 九蟠을 자수하였는데 그 발톱이 四爪이며, 皇帝에게 賞賜받은 관리는 五爪蟠 착용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蟒袍는 四爪와 五爪의 蟒紋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清朝의 蟒袍를 보면 四爪蟠을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五爪蟠紋이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龍紋은 다수의 연구⁷⁰⁾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蟒紋의 역사와 살펴보기로 한다. 蟒은 [爾雅 · 釋魚]에 “王蛇”라고 하여 뱀 중에 제일 큰 것이라고 하였고, 宋代에 [集韻]에도 “大蛇”라고 하여, 모두 “용”的 형상과는 다른 “뱀”的 형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龍의 형상을 하고 있는 蟒紋이 의복에 나타나는 것은 明에 이르러서이다. 明初 永樂(1402-1424) 이후 황제를 좌우에서 모시는 宦官이 蟒服을 입었다고 하며, 蟒은 五爪 · 四爪 구분이 있었다고 한다⁷¹⁾. 나아가明朝의 [野獲編]⁷²⁾에 正統(1436-1449)初 虞衡⁷³⁾와 弘治(1488-1505)년간에 閣臣은 황제로부터 蟒衣를 사여 받았는데, 蟒衣는 衣上에 蟒을 자수한 것으로 그 형상은 龍과 같으나 至尊 즉 황제 龍袍와 비슷하나 발톱이 한 개 적어 四爪龍이었으며 大紅色이 있다고 하여, 輔弼 즉 大臣宰相들이 蟒衣를 사여 받아 입을 수 있는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것으로 明代는 蟒衣라는 관복을 창제하였으며, 망은 용과 비슷하지만 발톱이 용보다 적어 “五龍四蟠”이라 하였으나⁷⁴⁾. 사여복은 결국 五爪蟠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술의 [野獲編]에 용에서 발톱을 하나 제거한 것을 蟒이라 하였다. 明代 복식에서 蟒紋을 살펴보면 공자 후예인 연성공의 妆花蟒襯袍 · 五彩繡蟒袍 · 斗牛補⁷⁵⁾는 모두 四爪蟠이다. 그리고 明代 초상화인 展角幞頭에 織金蟒袍를 입고 있는 관리는 四爪蟠, 烏紗幞頭에 織金蟒袍를 입은 관리는 五爪蟠袍를 입고 있다⁷⁶⁾. 蟒袍는 明代에 처음으로 출현하였고 四爪蟠 · 五爪蟠이 모두 있었다.

그러나 이미 宋代 이후 龍은 황제의 상징으로 되었고 [元史]에 용봉문을 금지하는 조목이 있다. 龍과 蟒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元代부터 五爪를 龍,

四爪를 蟒으로 하여 清朝에까지 민간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이어졌다⁷⁷⁾.

蟒袍는 蟒紋이 있는 衫를 말함으로 蟒服이라고도 하였으며 花衣 혹은 花袍라고도 하였다. 황태자의 蟒袍는 杏黃色, 皇子는 金黃色이며, 목들레와 수구에 青色緹金綵 鎏邊이 있고, 九條蟒을 자수하였고, 前後左右 開裾가 있다. 親王·親王世子·郡王은 皇子와 같다. 貝勒·貝子·鎮國公·輔國公은 四爪蟒 九條이며 金黃色을 사용할 수 없었다. 民公·侯·伯은 蟒袍에 藍이나 石青色을 사용하고 四爪蟒 九條를 장식했으며, 황제로부터 賜與者는 五爪蟒을 사용할 수 있었다.

清代의 蟒袍는 정식 관복이 되었다. [清史考·輿服志二]에 황제이하 칠品 이상 문무관은 蟒을 입을 수 있으며, 蟒의 數는 九에서 五로 품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大清會典]⁷⁸⁾과 [會典事例]⁷⁹⁾에 五爪는 관민이 친용할 수 없고, 단지 사여받게 되면 一爪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禁制가 있는 것을 보면 龍을 五爪이고 蟒은 四爪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禁制는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 실물에는 모두 龍과 蟒에 대한 구별은 없었다. 이것은 당시 발톱의 수로 龍과 蟒의 형상을 구별하지 않았다.

清代는 명칭 상으로 龍과 蟒의 구분은 확실하였으나 단지 그림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일치하였다. 지위가 높은 관리(一·三品)는 “五爪之蟒”, 일부의 貴戚은 特賞으로 “四爪之龍”을 입을 수 있었다. 이것은 명칭에 있어 龍, 蟒의 구별이 확실하였으나 당시 사회에 있어, 龍은 帝王의 花신으로 취급되어 帝后 및 貴戚을 제외한 기타사람들은 “僭用”을 할 수 없고, 황제의 것은 龍袍가 부르고, 보통 관리가 입으면 蟒袍가 불렀다⁸⁰⁾. 황제는 자기의 龍袍를 공신에게 特賜할 때는 필수적으로 “挑去一爪”를 하고, 이러한 경과를 거쳐 龍袍에 넣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구별이 없었다.

清代에는 龍紋과 蟒紋의 구별은 없었고 황제의 것은 龍袍, 귀족 및 관리의 것은 蟒袍라 불렀다. 색깔에 있어서도 하사품은 明黃色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龍袍는 전후좌우에 트임이 있었고, 蟒袍는 전후 트임만 있었다.

清代의 長袍는 대개 開衩가 되어 있어 이러한 開

衩袍를 “箭衣”라고 칭하였으므로 袖口에는 箭袖布가 달려 있고, 騎馬射箭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袖頭가 馬蹄形을 하고 있어 “馬蹄袖”라 하였다. 평시에는 수구를 위로 접어 올리고 行禮 시에는 밑으로 내린다.

清代의 蟒袍 形制와 紋飾은 龍袍와 동일하였으며 紹藻가 가득히 장식되어 있었음으로 花袍라 칭하기도 하였다고 한다⁸¹⁾. 王公大臣 및 각급 官員雜役의 최상의 예복이었다. 朝見·宴會·喜慶禮儀 등의 경우에 필수적인 것이 蟒袍이며, 조정에서 花衣期⁸²⁾ 즉 황제의 萬壽節(황제생일)의 전후에 蟒袍를 입어야만 하였다⁸³⁾. [大清會典]에 蟒袍는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⁸⁴⁾. 그리고 [清稗類鈔]에 의하면, 蟒袍의 도련의 트임은 宗室의 蟒衣는 전후좌우의 四開裾式임에 비하여, 그 나머지 一品에서 九品의 관원은 모두 좌우 양측 開裾式이다

<그림 8>은清代 말의 藍色袍는 九龍이 규칙대로 金絲로 자수되고 九龍을 둘러싼 공간에는 雲紋과 가지가지의 實狀문양이 색채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중국에서 상서로운 문양을 吉祥紋樣이라고 하여, 佛教 八寶의 문양이 추가 되고, 그 외에는 눈에 띠는 “蝙蝠”(박쥐문양)은 “福”과 同音으로清朝에서 흔히 사용된 문양이다. 도련 문양도清朝 朝服의 전형적인 것으로, 海水가 용솟음쳐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문양을 海水江牙라고 불린다. 海水의 중앙에 산악형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 고래의 길상문양의 하나이다. 이를 자수의 문양이 하나 하나 섬세하게 모아져 그것으로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호방한 느낌은 清시대의 工匠들의 탁월한 기술을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清代 蟒袍『天里參考館圖錄』

중국에서 龍紋은 周代의 十二章紋의 하나로, 다른 章紋과 동등한 길상문양으로 출발하였으나, 시대가 경과하여 隋唐 이후부터는 다른 章紋은 간략화 되고 龍紋만이 강조되기 시작하여 드디어 明代부터는 龍袍라는 말이 출현하듯이 龍紋위주로 다른 章紋은 흔적만 보이고 있었으며 清代에 황제의 吉服은 龍袍라 불러 더욱 龍紋만 부각되고 다른 紋章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도 띠지 않는다. 龍袍는 清代에 특히 유행의 절정을 이루어 황제 이외의 귀족이나 고관도 착용했으나 이 경우는 五爪龍이 아니고 四爪 이하의 龍 즉 蟒紋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清朝 후기가 되면 이 제도가 지켜지지 않았다⁸⁵⁾. 즉 蟒袍에도 모두 五爪의 龍紋을 사용하였으나 章紋이 없었다. 오늘날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남아있는 龍의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衿는 龍을 비롯한 十二章紋이 없으면 蟒袍라 불러야 할 것이다.

清代 후기에 龍袍생산은 질의 저하를 가져와 천이나 문양에 부정확한 조악품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으나 公式席上에서는 반드시 補服이나 褥子 같은 겉옷을 걸쳐 입어야 했으므로 龍袍문양이 다소 문란하여도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

V. 맷음말

龍의 紋樣의 衿는 이미 중국 고대에 출현하지만, 龍袍라 할 수 있는 것은 宋代에 처음으로 나타나, 清代에 이르기까지 천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 滿族은 자신의 문화속으로 明의 龍문화를 수용하여 龍문양의 절정기를 이룬다.

龍 문양이 기본 디자인이 되어 구성된 衿는 龍袍라고 정의하였다. 龍袍는 중국에 있어 후기 황조의 관복으로 특히 清代에 대단한 주목을 받게 된다. 龍문양은 唐代에 시작되어, 宋代는 황제만의 전용이었으며, 元代는 확실한 제도를 갖고 龍袍를 취급하였다. 明은 처음에 元의 龍袍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점차로 龍袍는明朝를 통하여 비공식복인 常服으로 四團龍袍였다.

清의 龍袍도 吉服인 비공식복으로 사용되어,

1759년 이후의 후기부터는 황제 龍袍에 十二章紋을 첨가하기 시작하였으나 五爪龍이 九條로 전체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雲紋과 吉祥紋들 속에 나머지 11개의 章紋은 識別이 매우 어려울 정도이다. 清代의 龍袍라 할 수 있는 것은 十二章紋과 五爪龍의 구조로 구성된 皇帝袍에 한정한다.

이와 같은 龍袍에 대하여,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龍袍라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蟒袍라고 불러야 한다. 즉 清代에 관리들이 착용하였던 吉服袍는 蟒袍이다. 주지하다시피 龍紋과 蟒紋의 차이는 五爪와 四爪에 있었으나, 황제가 하사한 衿는 五爪龍이었어도 실제로 착용할 때는 一爪를 제거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遺品이나 圖錄을 보아도 거의가 五爪蟒袍로 되어 있다. 이 같은 吉服상에 龍·蟒紋 사용의 혼란은, 외출시에 吉服위에 다시 補服을 걸쳐 입는 清代服飾의 규정으로 인하여 더욱 가중되었다.

清朝의 服飾奢侈는 清朝末의 경제적 빈곤과 혼란한 시기에 더욱 극치를 이루었으며, 여기에 清朝의 적조기술과 관복제작의 발달이, 龍袍 남발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때마침 외국인들의 中國文物收集熱을 타고 세계각국으로 운반된 것이다.

· 참고문헌 및 미주

- 史記 · 唐律疏義 · 野獲編 · 唐倉要 · 宋史 · 元史 · 明律 · 明史 · 東華錄 · 令典事例 · 六部成語 · 清國行政法汎論 · 清律輯註 · 清通志 · 皇朝禮器圖式
- 杉本正年, “龍袍について”, 衣生活 1974(3號)
- 神田信夫, “清朝”, シルクロード, 1980(6권2호)
- 朴春順, “シノワズリ-と フランスロココの服飾”, お茶の水女子大學 碩士論文, 1981
- 井塙茂樹, “王朝文明の偉大き”, 故宮博物院展圖錄, 朝日新聞社, 1982
- 金宰任, “龍紋의 發生과 展開”, 忠南大學校 碩士論文, 1990
- Schuyler van R. Cammann, “China's Dragon Robes”, NY, 1952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書局出版社, 1984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1984
-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編著, “中國歷代服飾”, 學林出版社, 1984

- 吳淑生, 『中國染織史』, 上海人民出版社, 1986
- 楊劍宇, 中國歷代帝王錄, 上海文化出版社, 1989
- 孟繼新, 『天下第一家』, 山東友誼書社, 1990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定陵(上), 文物出版社, 1990
- 『中國風俗大辭典』, 中國和平出版社, 1991
- 王維堤, 『衣冠古國』, 上海古籍出版社, 1991
- 蔡希芹, 『孔子の故郷めぐり』, 外文出版社, 1992
- 王胥兵·張銘遠, 『服飾與文化』, 中國商業出版社, 1992
- 葉濤·陳學英·陳凡明編著, 『孔子故里風俗』, 華語教學出版社, 1993
- 小島晉治·丸山松幸著, 朴元熇譯, 『中國近現代史』, 知識產業社, 1993
- 王智敏, 『龍袍』, 藝術圖書公司, 1994
- 黃能馥·陳娟娟, 『中國服裝史』, 中國旅游出版社, 1995

- 1) Chinoiserie란 17·18세기 서구에서 유행되었던 공예품에 있어 中國趣味 혹은 中國風을 말함.
朴春順, シノワズリーとフランスロココの服飾, 오차노미즈대학 석사논문, 1981, p.9.
- 2) [唐會要] 卷三十二, 延載元年 繡袍以賜文武官三品已上其袍文仍各有訓誠諸王則飾以盤龍及鹿。
- 3) Schuyler van R. Cammann, China's Dragon Robes, Philadelphia, 1951, p.4.
- 4) [宋史] 卷二百七十三 列傳第三十二 董遵誨, 太祖因令人賂邊民 總迎其母 送與遵誨 遵誨遣外弟劉 紹貢馬以謝 太祖解其所服真珠盤龍衣 命齋賜之。
- 5)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編著, 中國歷代服飾, 學林出版社, 1984, p.175.
- 6) 楊劍宇, 中國歷代帝王錄, 上海文化出版社, 1989, p.744.
- 7) [元史] 卷七十八 輿服, 蒙古人不在禁限 及見當怯薛諸色人等 亦不在禁限 惟不許服龍鳳紋。
- 8) [野獲編] 元時除朝會後 王公貴人俱戴大帽 視其頂之花樣為等威 皆見九龍而一龍正面者 則元主所 自御也。
- 9) [元史] 卷七十八 天子質孫, 中略 服金龍青羅 則冠金鳳頂綉紗冠。
- 10)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編著, 위의 책, p.223.
- 11) [元史] 卷七十八 輿服, 앞의 글.
- 12) [明史] 卷六十六 輿服二, 皇帝常服 洪武三年定 盤領窄袖袍, 永樂三年更定 袍黃 盤領 窄袖 前後 及兩肩各織金盤龍一, 皇后常服 洪武三年定 雙鳳翊龍冠 諸色圓衫 金織龍鳳文。
- 13) [明史] 輿服三, 歷朝賜服 衍聖公秩正二品 服織金麒麟袍 內閣賜蟒衣 又賜徐階教子升天蟒 萬曆 中 賦張居正坐蟒。
- 14) [明史] 卷六十八 輿服四, 器用之禁 洪武二十六年定 木器不許用硃紅及抹金 描金 雕琢龍鳳文。
- 1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定陵(上), 文物出版社, 1990, pp.81-87.
- 16) Schuyler van R. Cammann, 앞의 책, Plate 2참조.
李妙齡, 中國歷代服飾大觀, 百齡出版社, 1986, p.155.
- 17) [明史] 卷三百二十五, 滿刺加 在占城南 順風八日至龍牙門 又西行二日即至 或云即古頓遜 唐哥 羅富沙(中略) 永樂五年九月 遣事入貢(中略)光祿日致性見上尊賜王金繡龍衣二襲 麒麟衣一襲。
- 18) [明史] 卷三百三十二, 天方 古筠沖地 一名天堂 又曰 默伽(中略) 正德十三年 詔賜蟒龍金織衣及麝香 金銀器。
- 19) [明史] 卷三百三十二, 失刺思 嘉靖三年與旁近三十二部並遣使貢馬及方物 其使者各乞蟒衣 膝襠 磁器 布帛。
- 20) [明史] 輿服三, 永樂以後 宦官帝在左右 必蟒服(中略) 貴而用事者 賦蟒 單蟒面皆斜向 坐蟒則正 面向 第蟒有五爪 四爪之分 襪有紅 黃之別耳。
- 21) 神田信夫, “清朝”, シルクロード, 1980(6권2호), p.47.
- 22) 清朝에 관한 正史에 해당하는 것이 [清史稿]로, 역대 正史와 마찬가지로 紀傳體이다.
本紀25卷 志142卷, 表53卷, 列傳316卷, 모두 536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 32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清의 蔣良騏撰, 乾隆30년 10월 國史館을 東華門內에 열고, 이 책을 편찬하였으며, 清代의 國初부터 雍正朝(1735)에 이르기까지 編年體의 史書이다.
- 24) 會典은 행정상의 大綱을 나타낸 기초적인 典則으로, 그沿革을 이루는 諸事例를 則例 혹은 事例라고 한다. [大清會典]은 清代에 前後 5回 편찬되어서, 편찬시의 年號를 써워 구별하는 것 이 通例이다. 즉 [康熙會典]은 162卷으로 清初에서 康熙25年(1686)까지 행정법규 및 事例를 모아서 각 관청별로 분류 편찬한 것이다.
[雍正會典]은 250卷으로 清初부터 雍正5年(1725)까지에 대하여 편찬한 것이다.
[乾隆會典]은 100卷, [會典則例] 180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清初부터 乾隆23年(1758)까지에 대하여 편찬한 것이다.
[嘉慶會典]은 80卷, [會典事例] 920卷과 [會典圖] 132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清初부터 嘉慶17年(1812)까지에 대하여 편찬한 것이다.
[光緒會典]은 100卷, [會典事例] 1220卷과 [會典圖] 270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清初부터 光緒 22年(1896)까지에 대하여 편찬한 것이다.
- 25) 乾隆·道光年間 2회 편찬된 것으로, 실질상 特別 則例라고 볼 수 있다.
- 26) 嘉慶·道光年間에 2회 편찬된 것이다.
- 27) [東華錄] 崇德二年四月丁酉條 又諭諸王貝勒曰 昔金熙宗完顏亮 變易祖宗衣冠制度 循漢人之俗 服漢人衣冠 盡忘本國言語 迄至世宗 始復舊制 凡言語衣服及騎射之事.

- 28) [東華錄] 乾隆三十七年十月癸未條 諭 朕閱三通館進呈所纂嘉禮考內 於遼金元各代冠服之制 敘 次殊未明晰 遼金元衣冠 初未嘗不循其國俗 後乃改用漢唐儀式 其因革次第 原非出於一時 卽如金代朝 祭之服 其先雖加文飾 未至盡去其舊 至章宗乃概為更制 自應詳考 詮次 以徵蔑棄舊典之由 並酌入案語 俾後人知所鑑戒 於輯古關鑑 方為有當 若遼及元 可例推矣 前因編訂皇朝禮器圖會 親製序文 以衣冠必不可經言改易 及批通鑑輯覽 又一一發明其義 誠以衣冠為一代制度 夏收殷辟 本不相沿襲 凡一朝所用 原各自有法程 所謂不忘其本也 自北魏始有易服之說 至遼金元諸君 浮慕 好名 一再世輒改衣冠 益失其淳樸素風 傳之未久 國勢寢弱 浸淫及淪胥 盖變本忘先 而急患中之 襲 傲具在 甚可畏也.
- 29) 貝塚茂樹, "王朝文明の偉大さ", 北京 故宮博物院展圖錄, 朝日新聞社, 1982, p.18.
- 30) 위의 책, p.21.
- 31) 王胄兵·張銘遠, 服飾與文化, 中國商業出版社, 1992, p.32.
- 32) 王維堤, 衣冠古國, 上海古籍出版社, 1991, p.132.
- 33) [會典事例] 皇帝冠服, 皇后冠服, 皇貴妃·貴妃·妃·嬪冠服, 皇太子冠服, 皇子·皇子福晉冠服, 皇孫·皇孫福晉冠服, 皇曾孫·黃曾孫福晉冠服, 黃元孫·皇元孫福晉冠服, 親王冠服, 世子冠服, 郡王冠服, 貝勒冠服, 貝子冠服, 鎮國公冠服, 輔國公冠服, 鎮國將軍冠服, 輔國將軍冠服, 奉國將軍冠服, 奉恩將軍冠服, 宗室覺羅冠服, 固倫公主冠服, 和碩公主冠服, 郡主冠服, 縣主冠服, 郡君冠服, 縣君冠服, 鄉君冠服, 王公等側室女冠服, 固倫公主額駙冠服, 和碩公主額駙冠服, 郡主額駙冠服, 縣主額駙冠服, 郡君額駙冠服, 縣君額駙冠服, 鄉君額駙冠服, 親王福晉冠服, 世子福晉冠服, 郡王福晉冠服, 貝勒夫人冠服, 貝子夫人冠服, 鎮國公夫人冠服, 輔國公夫人冠服, 不入八分公及鎮國·輔國·奉國·奉恩將軍夫人等冠服, 超品民公侯冠服, 民公夫人冠服, 侯·伯·子·男及夫人冠服, 品官命婦冠服, 士庶冠服.
- 34) [會典事例] 未入流冠服 制如文九品.
- 35) 楊韶榮, 服飾,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6, p.8.
- 36) [會典事例] 乾隆五年 革職人員 不得違例濫用章服.
- 37) [會典事例] 商賈有捐納職銜者, 冠服各從其品.
- 38) [六部成語·吏部·加級·注解] 在本來品級 上加賜一等.
- 39) [光緒會典] 革職留任之員 准照原品頂戴服仍不准冒昧戴用.
- 40) [會典事例] 九年題準 大計大法 貪酷並在逃者 革職提問 龕輶無為 素行不謹者 革職.
- [清會典·吏部] 凡處分之法三 三曰革職.
- [六部成語·吏部·革職·注解] 將其官職革退.
- [清國行政法汎論·官吏法·懲戒種類·革職] 革職者 免現任官職之處分也 猶我免職.
- 41) [明律] 禮律 儀制 凡官民房庫服器物之類 各有等第 若違式僭用 有官者杖一百 罷職不敍 無官者 答五十罪坐 家長工匠 並笞五十 若僭用違禁龍鳳文者 官民各杖一百徒三年 工匠杖一百 連堂房 家小起發赴京 籍充局匠 違禁之物並入官 首告者 官給賞銀五十兩 若工匠能自首者 免罪 一錢給 賞.
- 42) 身分을 넘어 不法으로 사용하는 것.
- 43) [會典事例] 順治九年 凡五爪三爪龍滿翠團龍緞 及黃色秋香色黑狐皮 上賜者許用外 餘皆禁止不得 存留.
- 44) [會典事例] 順治九年 參照.
- [會典事例] 順治十二年 喇嘛格降服用黃紅色 非奉上賜 不得用五爪龍團花.
- 45) [會典事例] 五爪龍衣服及五爪暗龍緞 若上賜者許用 仍去一爪.
- 46) 주41) 참조.
- 47) [清律輯註] 有官者 應知禮法 故違式之罪 倍重於無官者 且法行自貲始也.
- 48) [清律輯註] 龍鳳文乃御用之飾 官民皆不得用 所謂禁也 違式違禁俱屬僭用 然違式雖係僭用 猶是 官民應用之物 不過尊卑貴賤不合式耳 故其罪輕 但令改正 物不入官 違禁之物 則非官民應用者 僕越無等 故其罪重 物並入官也 式有等第 故違者之罪 官民異科 禁無分別 故違者之罪 官民同論 也.
- 49) [唐律疏議] 卷26, 諸營造舍宅車服器物 及墳墳石獸之屬 於令有違者杖一百.
- 50) [會典事例] 康熙四十九年覆準 內外文武官 或議敍加級 或捐納加級 例不得過一品 雍正八年諭 大小官員頂帽補服坐褥等項 各宜遵照現任品級 不得僭越 從前已降諭旨 後因御史等查奏 文武官員 內有補服與帽頂不相符者 肢又降旨 頂戴等項 各按本身品級 不得計算加級 所頒諭旨甚明 近聞文 武官員 仍有越制擅用者 及該管符員查問時 則引從前準算加級之例 掩飾支吾甚劇不合 緝後內外文武大小官員 帽頂補服坐褥等項 應照本身現任品級 不得指稱加級 以開僭越之端.
- 51) 包銘新·趙豐, 中國織繡藝術與收藏, 上海書店出版社, 1997, p.15.
- 52) 八吉祥은 불교 전설중의 보물로, 八種은 길상을 상징하는 器物로 조성되어 있어, 사람들은 그 것을 길상의 징조로 간주하여, 중국 전통 복장 중 장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八種은 法螺(conch shell) · 法輪(wheel) · 寶傘(umbrella) · 白蓋(canopy) · 蓮花(lotus) · 寶瓶(vase) · 雙魚(two fish) · 盤長(endless knot)이다.
- 53) [清會典事例·工部·織造] 制帛 順治八年定 江寧 織造局設 神帛機三十張 歲織帛四百端.
- 54) 吳淑生, 中國染織史, 上海人民出版社, 1986, p.270.
- 55) 清代의 如意官은 지금 北京의 北海公園 謩舫齋內에

있었음.

- 56)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1984, p.494.
- 57) 蔡希芹, 孔子の故郷めぐり, 外文出版社, p.43.
- 58) 孟繼新, 天下第一家, 山東友誼書社, 1990, p.100.
- 59) 蔡希芹, 앞의 책, 畫報參照.
- 60) 黃能韻·陳娟娟, 中國服裝史, 中國旅遊出版社, 1995, p.284.
- 61)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編著, 앞의 책, p.236.
- 62) [明史] 輿服三, 正德十三年 尋賜群臣大紅綉絲羅紗各一 其服色 一品斗牛 二品飛魚 三品蟒 四 五品麒麟 六 七品虎 彪.
- 63) 書名, 三十卷. 明 沈德符 撰. 이 책은 集古錄의 例를 모방하여, 見聞을 雜述한 것임. [野獲編] 蟒衣爲象龍之服 與至尊所御袍相肖 但減一爪 正統初始以賞虜賊 弘治中 閣臣劉健 李東陽等俱拜大紅蟒衣之賜 輔弼得蟒衣自此始.
- 64) 격사는 중국 특유의 手織物로, 우선 紙絲를 걸어놓고, 그 위에서 밀그림의 문양을 묘사함에 있어 色絲를 감은 작은 북으로 織絲에 심어서 짜는 방법.
De Verboden Stad The Forbidden City. Museum Boymans-van Beuningen Rotterdam, p.169参照, <그림 5>참조.
- 65) 包銘新·趙豐 編著, 中國織繡鑑賞與收藏, 上海書店出版社, 1997, p.43.
- 66) 天子의 地位를 말함. [易, 履, 則中正履帝位而不疚疏] 以剛處中 得其正位 居九五之尊 是剛中正 履 帝位也.
- 67) [清通志·器服略] 皇帝龍袍 色明黃 領袖俱石青片金緣 繡文金龍九 列十二章 間以五色雲 領前後 正龍各一 左右及交襟處行龍各一 袖端正龍各一 下幅八寶立水裾左右開.
- 68) Schuyler van R. Cammann, China's Dragon Robes, NY, 1952.
- 69) [皇朝禮器圖式] 皇子蟒袍 用金黃色 片金緣 通繡九蟒 裙四開 其形制達于宗室 民公用藍及石青諸 色隨所用 通繡九蟒 皆四爪 贈賜五爪蟒綬者亦得用之.
- 70) 金宰任(龍紋의 發生과 展開, 충남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1990)을 비롯하여 다수의 논문이 있음.
- 71) [明史] 輿服三, 永樂以後 宦官在左右 必蟒服(中略)
- 第蟒有五爪 四爪之分 襯有紅 黃之別耳.
- 72) [野獲編] 蟒衣爲象龍之服 與至尊所御袍相肖 但減一爪 正統初始以賞虜賊 弘治中 閣臣劉健 李東陽等俱拜大紅蟒衣之賜 輔弼得蟒衣自此始.
- 73) 異民族 혹은 少數民族의 首長.
- 74) 中國風俗大辭典, 中國和平出版社, 1991, p.627.
- 75) 高漢玉·屠恒賢 主編, 衣裳, 上海古籍出版社, 1996, p.217, p.219, p.223.
- 76)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 編著, 앞의 책, p.236.
- 77)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4, p.457.
- 78) [大清會典] 凡五爪龍綬立龍綬團補服 官民不得穿用 若頒賜五爪龍綬立龍綬 應挑去一爪穿用.
- 79) [會典事例] 紅絨結頂冠 惟皇子不論爵秩 均准用 其餘王公以下額駙等 暨民公侯伯一二品大臣侍衛 內 有蒙上賜者 止得將所賜之帽用之 不得如式更制 郡王以下均不得用織金彩色五爪龍衣服及五爪暗龍綬 若上賜者許用 仍去一爪 若王等賞所屬織金彩色龍者 雖服過亦去一爪 方得賞給 貂衣不得賞五品以下官.
- 80) [會典事例] 乾隆五年 外省佐雜微員 謁見上司 不得用蟒袍 違者 照例參處.
- 81) 王智敏, 龍袍, 藝術圖書公司, 1994, p.95.
- 82) 花衣는 清代, 慶典 혹은 節日에 百官이 입는 蟒袍의 별칭이며, 花衣期는 慶典이 있으며, 百官은 모두 蟒服을 입고, 官署는 刑罰事務를 정치하는 이 기간을 말한다.
- 83) [大清會典] 乾隆五年, 諭本月二十五日 恭遇皇太后萬壽聖誕 普天同慶 凡大小臣工 俱著穿蟒袍七日不理刑名 永著爲例.
- 84) 一等級: 親王·郡王, 光祿大夫·連威將軍·榮祿大夫·振威將軍(即文武一·二品) 除特賜穿金黃色者 蟒袍一律用藍色或石青色. 片金邊緣 通繡四爪蟒九條 特賜五爪蟒者除外.
- 二等級: 貝勒·貝子·奉國將軍·文武三品·一等侍衛 蟒袍准用石青·藍色 片金緣 繡四爪蟒九條.
- 三等級: 奉恩將軍·文武四品至六品官·二等侍衛為一等級可著四爪蟒八條.
- 四等級: 文武七品至九品官著過肩蟒紋 全身共繡五蟒.
- 85) 杉本正年, 龍袍について, 衣生活 1974, 3호 p.15.